

내부통제규정

옐로우독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옐로우독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 이라 한다)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대내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가 수행하는 내부감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라 함은 모든 임직원이 업무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각종 법규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모든 제도 및 절차를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라 함은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의 리스크 소재와 규모 및 준수해야 할 법령과 규정을 특정하고 이를 조직 및 직무 분장상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준법감시체제와 리스크 관리체제를 말한다.
3. '준법감시'라 함은 업무 전반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의 위반여부를 점검, 조사, 감시할 수 있는 법규준수태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동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이사회 및 감사 등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5. "법령"이란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제5조(내부통제 조직)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제6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 ②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규정,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직접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법감시인)

-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임직원)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1 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규(이하 "법규"라 한다)를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조직·업무를 관리하는 임직원은 소관조직·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수행 시 준수절차) 회사는 임직원이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

제11조(준법감시인의 임면)

- ①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임면 시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 시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 회사는 부서장급 이상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3.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 시 이사회 및 감사 앞 제재의견 표명
6. 위법사항 등(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함)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7. 필요 시 이사회 등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다만, 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
8. 준법감시 담당직원 등에 대한 일부 근무평정
9.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10. 기타 이사회·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법지원부) 회사는 준법감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2. 회사가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무, 부수업무 및 경영업무
 - 3.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검직을 금지한 업무
- ③ 준법감시인이 제 2 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 2.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요구
 - 3.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배포
 - 4.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
 - 5. 감독당국, 검사부서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지원

제17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 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 1. 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 2.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
 - 3.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 4.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 5.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 ②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과 관련하여 정기·수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등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타 조직과의 협조) 준법감시인과 감사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계획

및 감사의 검사계획 수립 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이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조정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내부통제 관련 회사(임직원) 준수사항

제22조(임직원의 의무)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 이용자의 성별·종교·장애·나이·출신국가·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회사 이용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은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의무준수와 관련하여 별지 양식의 준법서약서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한다.

제23조(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

-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검직 수행과정에서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절차) 회사는 새로운 금융업무 개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 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회사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익제공행위, 회사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행위,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기타 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신용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불공정영업행위 방지)

- ① 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요행위,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행위, 부당한 편익 요구 또는 수령행위 기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금융사고의 예방)

- ① 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회사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2. 전산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

② 회사의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이해상충 관리방법 및 절차) 회사는 이해상충방지규정의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 시 회사와 회사이용자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평가하여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재산(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재산을 포함하고,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가 투자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가 투자한 법인의 증권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0조(광고)

- ① 회사는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회사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회사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회사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부수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제 5 장 보칙

제32조(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 회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전달체제)

- ①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1 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4조(내부고발제도)

- ① 회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금지 등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명령휴가)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 ① 회사가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규정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세부규정 위임) 이 규정의 시행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

준법서약서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로 임하겠습니다.
2. 회사의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방조하지 않겠습니다.
3. 불법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이익과 회사재산을 침해하여 준법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엘로우독 주식회사 귀중